

族譜編輯프로그램 賣買契約書

下記 當事者間에 族譜編輯프로그램 賣買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○○○씨중친회 회장 ○○○와(과)(이하 “甲” 이라 稱함) (주)○○○○ 대표 ○○○은(이하 “乙”이라 稱함) 下記 各項을 契約 締結하고 “아래”契約 條項을 遵守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契約書 2부를 작성하여 “甲” “乙”양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◆ 계약 조항 ◆

제 1 조 【제품명, 수량, 금액】

1. 제 품 명 : 족보전용편집프로그램(자손록, 세계도, 색인부 전용편집프로그램)
2. 수 량 : ○ 개
3. 금 액 : 一金○○○만원整

제 2 조 【결제방법】

계약금으로 一金○○○만원整을 결제하고 잔금은 납품 시 결제한다.

제 3 조 【프로그램 납품시기 및 설치장소】

1. 프로그램 납품은 20 년 월 일까지 납품 완료한다.
2. 설치장소 : 프로그램 설치는 “甲”이 지정하는 장소의 컴퓨터에 설치한다.

제 4 조 【프로그램 기능 및 보수정비기간】

1. 프로그램 기능은 계약 시 확인한 것 또는 제안서 등에 기재된 기능으로 한다.
2. “乙”은 프로그램 설치 후 정상 동작 상태에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A/S를 한다.
3. 무상서비스 기간 이후의 A/S 비용은 실비(교통비, 인건비 등)로 청구한다.
4. 프로그램 관련 교육은 “乙”의 장소에서 ○○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한다.
단, “甲”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(교통비, 인건비 등)을 지불해야 한다.

제 5 조 【계약의 위반】

“乙”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“甲”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환급하고 “甲”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“甲”이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“乙”이 취득한다.

제 6 조 【계약의 해석】

1.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“甲”과 “乙”이 협의하여 조정한다.
2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을 및 일반상관례에 따른다.

제 7 조 【관할법원】

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“乙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8 조 【기타사항】

위의 조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(수정, 변경 등)은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아래 “특약사항”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제 9 조 【특약사항】

- ①
- ②
- ③

20 년 월 일

甲 : 서울시 종로구 ○○동 1234
○○○씨중친회
회 장 : ○ ○ ○

乙 : 서울시 마포구 ○○동 52-1
(주)○○○○
대 표 : ○ ○ ○